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332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소라, 이기옥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6. 4.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4.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이후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2011. 3. 8. 668,874,1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3. 16.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94647호).

나. 원고는 2016. 8. 22.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C의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이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일부 회수한 대위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5523호). 위 법원은 2017. 6. 16. 영업양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45,815,744원 및 그중 283,090,561원에 대하여 2011. 3. 18.부터 2012. 3. 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항소,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7. 1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6. 4.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1386호 양수금 청구사건에 따른 판결원리금 1,424,307,716원 상당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외 회사가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정비사업대행계약 등에 의한 용역대금 청구채권 및 인센티브 중 1,424,307,716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8. 6. 19. 소외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10. 소외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한 채권의 일부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소외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채권자가 그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신용보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선행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선행판결을 받을 무렵 소외 회사가 소외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매출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은 물론 더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는 그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0. 3. 25.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C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위 회사의 영업양수인이라는 전제에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취지의 선행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345,815,744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가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2013. 9.경 소외 추진위원회와 계약금액을 2,856,21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정비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첨부된 부속합의서는 소외 추진위원회가 소외 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자 분양계약비율에 따라 합계 5,000,000,000원(분양계약율 100% 기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 위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결과 2019. 9.경 공동주택 일반분양계약율이 100%에 도달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9. 9. 9. 소외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라 약정한 인센티브 5,00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회사는 소외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정비사업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채권 및 5,000,000,000원에 달하는 인센티브 채권의 장래 발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중 일부에 해당하는 1,424,307,716원 상당의 채권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 앞서 본 소외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대금 및 인센티브 채권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용역대금 및 인센티브 채권에 관하여 보면,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소외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약정한 인센티브 중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나머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센티브 지급을 약정한 부속합의가 무효여서 인센티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2661호)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21. 10. 23.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04121호)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에는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인센티브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정비사업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공동주택의 착공시, 해산시에 각 받을 수 있는 각 285,621,000원의 정지조건부 채권뿐이었다고 보인다. 이에 반하여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은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액만 합산하여 보더라도 위 적극재산의 액수를 현저하게 초과하므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여러 채권자 중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에게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인센티브 채권의 성립에 관한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적극재산이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상회하여 책임재산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을 것이어서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소외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던 정비사업은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까지도 세입자 보상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상태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에는 아직 인센티브 채권의 지급 전제가 되는 일반분양이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남은 용역대금의 지급 조건이 되는 공동주택의 착공조차도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인 2018. 9.경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회사에게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인센티브 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나 합리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2019년경에 가까스로 분양이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일반분양율이 100%에 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또한 소외 회사가 관련사건에서 소외 추진위원회의 총회결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부속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관련사건에서 C의 대표이사였고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E 및 기타 직원들이 소외 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회나 정기총회에 수차례 참석하면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 등을 근거로 소외 회사로서는 소외 추진위원회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속합의를 무효로 판단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특히 소외 회사는 선행판결을 받기 전까지 2016년경부터 원고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2017. 6. 16. 패소 취지의 제1심판결을 받고 2018. 4. 4. 항소기각 판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직전인 2018.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

⑤ 이 사건 채권양도는 단순히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에 수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신규 자금을 융통하였다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외 회사의 사업 갱생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가 2018. 9. 10. 소외 추진위원회가 지급하는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100,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이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변제자력을 확보하게 하려는 의사였다기보다는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용역대금 채권 100,000,000원과 인센티브 채권 1,324,307,716원이 이전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관련사건에서 이와 같은 합의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는 무려 2009년경부터 C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대위변제를 하였고 2014년경에는 소외 회사가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소외 회사와 관계를 맺어왔을 뿐 아니라 그 자금 사정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약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그 양도된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인 2018. 9. 10. 소외 추진위원회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앞서 본 피보전채권의 액수보다 적은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위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범위(100,000,000원)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조수진, 판사 오민관

별지

목 록

주식회사 B가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비사업대행계약 등에 의한 용역대금 청구채권 및 인센티브 1억 원. 끝.

1)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전체 채권액은 1,424,307,716원이나, 원고는 2022. 3. 2.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위 전체 채권 중 채권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범위에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같은 100,000,000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